

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2월 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별 청년센터 지원, 심리상담·구직서비스 등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, 청년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,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, 청년시설 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
- 나. 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 제10조 및 제2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
- 다.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칭 :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
- 공간구성 : 개방 활동공간,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세미나실 등
- 위치 및 규모

구분		소재지	공간규모	비고
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센터	현 위치	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	218㎡	-
	이전예정지 (2022.7.)	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대 (역세권 청년주택 건물 지상2층 일부)	1,452㎡	시설운영 사무 추가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021. 7. 1.~2024. 6. 30.(3년)
-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 - 지역별 청년센터 지원 : 서울청년센터(YC) 지원, 정보집적 및 제공(광역센터 기능)
 -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: 심리상담 운영지원, 청년지원·구직서비스 운영
 - 인력양성 및 관리 : 청년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
 -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: 홍보, 오리엔테이션, 연계지원, 기본교육
 - 사업 조사·분석 및 대외협력·홍보 등
 - 청년시설 관리 운영[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 개관 시(2022. 7.예정), 해당 시설 내 청년활용공간 관리]
- 소요예산 : 3,468백만원('21년 편성예산 기준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0조 및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,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
- 청년시설 관리·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,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 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 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청년청 청년센터팀 강지윤(☎ 2133-4322)